

징계의 종류		징계의 효력	관련 법 규
중징계	강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동종의 직무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 ◦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(경력평정 제외)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◦ 기간 중 보수 전액 감감 ◦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간 승진, 승급제한(기산조항 참조) 	「국가공무원법」 제80조 「공무원 수당규정」 제19조제5항[별표4]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14조 「교육공무원 임용령」 제16조 「교육공무원 승진규정」 제11조
	정직 1~3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◦ 기간 중 보수 전액 감감 ◦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간 승진, 승급제한(기산조항 참조) ◦ 처분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 	「국가공무원법」 제80조 「공무원 수당규정」 제19조제5항[별표4]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14조 「교육공무원 임용령」 제16조 「교육공무원 승진규정」 제11조
경징계	감봉 1~3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감봉 기간 중 보수(수당 포함)의 1/3을 감감 ◦ 처분기간 및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12월간 승진, 승급제한(기산조항 참조) 	「국가공무원법」 제80조 「공무원수당규정」 제19조제5항[별표4] 「공무원 보수규정」 제14조 「교육공무원 임용령」 제16조
	견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◦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6월간 승진, 승급 제한(기산조항 참조) 	「국가공무원법」 제80조 「공무원 보수규정」 제14조 「교육공무원 임용령」 제16조

※ 강등(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),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.(「국가공무원법」 제80조제6항, <신설 2023. 4. 11.>)

※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(이하 “학급담당 교원”이라 한다)으로 배정할 수 없다. (교육공무원법 제17조)<신설 2020.12.22., 2022. 10. 18.>

※ 승진, 승급 제한 가산(「교육공무원 임용령」 제16조,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14조)

- 가. 승급제한 6개월 가산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(공금의 횡령 · 유용 등)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, 음주운전(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), 성폭력,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따른 징계처분
- 나. 승진제한 6개월 가산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, 음주운전(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), 성폭력, 성희롱, 성매매, 상습폭행,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

※ 승급 산입 : 강등 9년, 정직 7년, 감봉 5년, 견책 3년(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산정, 다만,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.)

마)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(「국가공무원법」)

- (1) 제56조 : 성실 의무
- (2) 제57조 : 복종의 의무
- (3) 제59조 : 친절 · 공정의 의무
- (4) 제59조의2 : 종교증립의 의무
- (5) 제60조 : 비밀 엄수의 의무
- (6) 제61조 : 청렴의 의무
- (7) 제63조 : 품위 유지의 의무